

제35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개정한 헌법 및 법률에 따라 교재에 적용, 변경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. 개정판 교재가 나오기까지 참고하여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.

「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- 집사와 권사」 2022년 1월 24일 (2판 1쇄)

P. 44

5) 교회에 헌금과 교회 사업에 대한 의무금을 낸다.

→ 교회의 의무금(십일조)과 교회 사업에 대한 헌금을 낸다 <개정>

집사는 헌금과 의무금에 대한 책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.

→ 집사는 최선을 다 교회 사업에 대한 헌금과 의무금(십일조)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<개정>

P. 45

십일조를 포함한 헌금과 의무금 생활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.

→ 교회 사업에 대한 헌금과 의무금(십일조) 생활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. <개정>

P. 46

집사는 헌금과 교회 사업을 위한 의무금을 내는 일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.

→ 집사는 교회의 의무금(십일조)와 교회 사업에 대한 헌금 내는 일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. <개정>

「하나님이 쓰시는 사람」 2022년 1월 17일

P. 27

장로의 사명

⑤ 담임자의 부재나 유고 시에 담임자 또는 감리사가 부담임자나 장로에게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담임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
→ ⑤ 담임자의 부재나 유고 시에 담임자 또는 감리사가 장로에게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담임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 <개정>

P. 39

② 확정된 예산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교인들에게 의무금을 부담케 하고 헌금할 것을 청한다.

→ ② 확정된 예산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교인들에게 교회의 의무금(십일조)을 부담케 하고 헌금할 것을 청한다. <개정>

「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 - 장로」 2021년 11월 25일

P. 61

⑤ 교회에 헌금과 교회 사업에 대한 의무금을 낸다.

→ 교회의 의무금(십일조)과 교회 사업에 대한 헌금을 낸다. <개정>

P. 66

⑥ 교회 경제법에 정한 대로(종류, 기일, 금액)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.

→ 교회 경제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. <개정>

P. 67 총회 대표는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.

① 교역자 직능대표 : 현직 감독회장과 감독 및 당선자, 감리사 ② 평신도 직능대표 : 남선교회, 여선교회, 청장년선교회, 청년회, 교회학교 각 전국연합회장, 연회 실행위원 ③ 선출직 교역자 대표 : 정회원 수의 비율로 연회에 배정하여 연급, 전문성, 성별을 고려하여 연회에서 선출한다. ④ 선출직 평신도 대표 : 정회원과 동수로 연회에 배정하여 임명된 연수와 전문성, 지방회를 고려하여 연회에서 선출하되 제4조(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 원칙)에 의거하여 15%는 여성 대표로 한다. ⑤ 총회 대표는 개체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전년도 12월까지 유지재단에 편입登記(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, 불가확인서 제출은 당해연도 지방회 개회 전까지) 및 부담금을 완납한 교회여야 한다. ⑥ 총회 대표는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여야 한다. ⑦ 미파자 및 휴직자는 총회 대표가 될 수 없다. ⑧ 총회 대표로 사유 없이 등록하지 않거나 회의에참석하지 아니한 회원은 차기 총회 대표가 될 수 없다. 다만,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한 이는 제외한다. ⑨ 각 연회별로 교역자, 평신도 각 10명씩을 총회대표 후보로 선출한다. ⑩ 총회 대표는 다른 연회로 이명할 경우 총회 대표권을 상실한다.

→ ① 교역자 직능대표 : 현직 감독회장과 감독 및 당선자, 감리사 ② 평신도 직능대표 : 남선교회, 여선교회, 청장년선교회, 청년회, 교회학교 각 전국연합회장, 연회 실행위원 ③ 감리회 본부 임원 및 도서출판kmc 사장은 총회직능대표가 된다. ④ 선출직 교역자 대표 : 정회원 수의 비율로 연회에 배정하여 연급, 전문성, 지방회를 고려하여 연회에서 선출한다. <개정> ⑤ 선출직 평신도 대표 : 정회원과 동수로 연회에 배정하여 임명된 연수와 전문성, 지방회를 고려하여 연회에서 선출한다. <개정> ⑥ 자격자가 없어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, 15%는 여성으로, 15%는 50세 미만 이로 선출한다. <개정> ⑦ 교회 경제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지 아니하거나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명의로登記(법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)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총회대표가 될 수 없다. <개정> ⑧ 총회 대표는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여야 한다. 다만, 당연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 <개정> ⑨ 미파자 및 휴직자는 총회 대표가 될 수 없다. ⑩ 총회 대표로 사유 없이 등록하지 않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회원은 차기 총회 대표가 될 수 없다. 다만,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한 이는 제외한다. ⑪ 각 연회별로 교역자, 평신도 각 10명씩을 총회대표 후보로 선출한다. ⑫ 총회 대표는 다른 연회로 이명할 경우 총회 대표권을 상실한다.

「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 - 장로고시 문제집」 2021년 11월 25일

P. 27

17. 교인이 준행해야 하는 의무 다섯 가지 이상을 쓰라.

답

⑤ 교회에 헌금과 교회 사업에 대한 의무금을 낸다.

→ ⑤ 교회의 의무금(십일조)과 교회 사업에 대한 헌금을 낸다. <개정>

P. 30

27. 연회 조직에 대한 내용이다. 맞는 것은 무엇인가?

답

② 교회 경제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.

→ ② 교회 경제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. <개정>

P. 47

12. 장로의 직무 가운데 세 가지 이상 쓰라.

답

⑤ 담임자의 부재나 유고 시에 담임자 또는 감리사가 부담임자나 장로에게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담임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
→ ⑤ 담임자의 부재나 유고 시에 담임자 또는 감리사가 장로에게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담임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 <개정>

P. 48

14. 다음은 장로의 파송 중 유보에 관한 사항이다. (①~③)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라.

· 부득이한 사정으로 파송 받은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이명하려고 하는 장로가 담임자 및 본인 또는 (②) 이상의 동의로 감리사에게 요청한 경우

→ 부득이한 사정으로 파송 받은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이명하려고 하는 장로가 담임자나 본인 또는 (②) 이상의 동의로 감리사에게 요청한 경우 <개정>